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안 번호	934
----------	-----

제안년월일 : 2009년 6월 30일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주 문

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지원방안과 우리민족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독도를 탐방하고 중앙기관에 대한 각종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기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 활동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한다.

2. 제안이유

○ 동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독도의 현안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08년 11월 10일부터 '09년 8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아직 독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검증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동 특별위원회가 좀더 심도깊은 연구와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2009. 8. 10~2009. 11. 9)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한다.

(2009. 8. 10~2009. 11. 9)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